제61호(2019. 5. 31.)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목 차
contents

1. 서론 ····· 1

2. NTE 보고서의 주요국 무역장벽 ····· 3

3. NTE 보고서의 한국 무역장벽 ····· 19

4. 결론 및 시사점 ·····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 문의	조성주 부연구위원	061-820-2376	sungjucho@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61호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5.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TRQ, 증치세 환급 등의 제도가 무역왜곡적이라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안전법, 축산물 수입금지, 생명공학작물 승인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
- 농업보조금과 TRQ 제도를 지적하고 2016년 WTO에 제소하여 2019년 미국이 승소

○ **일본 SPS 조치와 수입관리 시스템의 엄격성·복잡성, 쌀 수입관리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첨가물 제도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전반적 제도의 엄격성과 긴 처리 기간이 수출국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 일본의 쌀 TRQ 운영과 수입쌀 유통과정의 불투명성과 엄격성을 지적

○ **캐나다의 낙농 등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과 곡물, 주류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지적**
- TBT와 관련, 캐나다 종자법과 치즈 성분표준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 도입한 포장전면표시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
- 수입규제와 관련, 낙농부문 용도별 우유등급(milk class), 지역별 수입산 주류 판매 제한 등 지적

○ **EU의 TBT 조치가 회원국별로 상이함을 지적하고, SPS 조치와 안전성에 대한 EU의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함. 또한,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 TBT와 관련, 회원국별로 식품정보표시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상이한 점 등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허용, 생명공학기술 및 작물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지적
- 수입규제와 관련,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과 EU의 독자적인 관세분류체계, 원예작물의 보조금 등을 지적

○ **한국의 TBT, SPS, 수입규제로 인해 신선 농축산물 시장접근이 제한적임을 지적**
- TBT와 관련, 주류 라벨링과 유기농식품 관련제도에 대해 우려
- SPS와 관련,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감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2018년에는 과일류, 2019년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SPS 조치 해결을 모색
- 수입규제와 관련,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모니터링

○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미국의 관심 부문이며, 특별히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실제 무역 협상의 주요 이슈이거나,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적 사항과 협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01 서론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 조사하여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함.**

○ USTR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및 관심국(약 60개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관련 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 **국별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는 모두 미국의 통상전략과 이익을 반영하므로 한국의 이해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역 또는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각국의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함.**

○ NTE 보고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국가의 법, 제도,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 무역장벽의 변화와 미국의 무역장벽 대응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최근 5년간(2015~19년)의 NTE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함.**

○ 주요국으로는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국가이자, 한국의 중요 교역상대국들인 중국, 일본, 캐나다, EU를 살펴봄.

- 캐나다는 미국과 2018년 11월 USMCA(NAFTA 재협상)를 타결하였으며, 일본, EU,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임.[1)]
- 일본과 미국은 2018년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2019년 4월 2차 무역협상을 추진함.
- EU와 미국은 2019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에 찬성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농축산물 포함 여부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 중국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임.

1) USMCA란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의미하며, 기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인 NAFTA 협정 재협상의 결과로 출범한 새로운 협정임. 2017년 협상이 개시 후 2018년 10월 최종 타결되어 각국의 의회비준을 앞두고 있음.

○ 더불어 미국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사안을 바탕으로 對한국 교역 관심사항 등에 대해 살펴봄. 한국은 미국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 대상국임.

- 2016~2018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약 68억 달러로 미국의 對세계 농축산물 수출액의 5%임(4위). 동 기간 평균 한국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72억 달러로 對세계 농축산물 수입액의 29%(1위)에 해당함.[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발효됨. 2018년 9월 개정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농업 관련 쟁점 사안은 없었음.

2) 농축산물은 HS code 기준 01류~2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03류(수산물)는 제외함. 교역액은 Global Trade Atlas(https://connect.ihs.com/gta) 자료로 집계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미국의 수출액은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가격 기준이며, 한국의 수입액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가격 기준임.

02 NTE 보고서의 주요국 무역장벽

중국의 농업보조금, TRQ, 증치세 환급 등의 제도가 무역왜곡적이라 지적

□ 본 장에서는 미국이 최근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캐나다, EU를 중심으로, 미국이 NTE 보고서에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동향(2015~19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1. 중국

□ NTE 보고서는 중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식품 안전법, 생명공학작물의 승인, 농업보조금,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치세 환급[3] 및 관련제도 등을 지적함.

□ 중국의 SPS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식품안전법, 축산물의 수입금지조치, 생명공학작물의 승인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해옴. 지적사항은 주로 식품안전법의 수출업체 및 제품 등록 요건과 대상 품목의 부적절함, 중국의 생명공학작물 승인 보류 및 비동기화 확대, 미국산 축산물과 원예작물의 수입금지조치와 관련됨.

○ (식품안전법) 중국은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에서 상품 수출업체의 시설 및 제품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는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해산물, 곡물 등을 포함함.

- 미국은 중국이 강력한 국제적 반대와 2년간의 시행지연에도 불구하고 저위험 식품 수출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함.
- 이러한 조치들은 수출당사국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임을 강조함. 또한, 이러한 규제는 중국이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함.

○ (축산물 수입금지조치)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해왔으며, 안전성 증명이나 지역화 인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수입요건 등으로 시장접근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함.

- 2019년 4월,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는 대신 상호적으로 중국의 對미국 가금류

3) 중국의 조세제도 중 하나로 증치세 납부를 완료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납부한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임.

수출의사를 밝혔으며,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조치 해제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의견을 내비침.[4)]

- 2017년 5월,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힘. 중국은 국제식품안전 및 동물건강기준에 부합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출하를 허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수의약품, 성장촉진제, 동물건강 등과 관련된 특정 조건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특정조건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의약품(베타작용제(성장촉진제)와 합성호르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제한한다고 평가함.
- 중국은 돼지고기 수입관리에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odex)의 잔류허용기준(MRL)을 받아들이는 대신 특정 수의약품과 성장촉진제 사용을 금지하며, 수입 돼지고기의 살모넬라 검출에 대해 제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규제가 불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해 옴.[5)]

○ (생물공학작물 승인) 미국은 중국의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에서 규제 승인이 보류 중인 제품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무역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알팔파 수출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6)]

□ 미국은 대표적인 중국 무역장벽으로 농업보조금과 TRQ 제도를 꾸준히 지적해왔으며 각 사안에 대해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한 바 있음. 두 개 분쟁 모두 2019년 미국의 승소로 판결남.

○ (농업보조금) 미국은 중국의 목화, 돼지고기, 밀,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조치 증가는 불공정한 농업 보조금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농산물을 과잉생산하도록 만들어 전 세계에 같은 곡물을 수출하는 미국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2016년 미국은 중국의 밀과 쌀에 대한 국내보조가 WTO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였고 2019년 미국의 승소로 판결 남.

○ (TRQ 관리)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TRQ를 적용해 미국 곡물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을 제한한다고 주장해왔음. 2016년 12월, 미국은 중국의 쌀, 밀, 옥수수 관련 TRQ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WTO 소송을 제기함. WTO 분쟁 패널은 중국이 TRQ를 적용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년 4월 미국의 승소로 판결남.

---

4) 중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급등 때문으로 보임. 최근 중국 내 ASF 확산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 확대 및 가금류 교역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육류제품 교역행태 변화가 예상됨.

5) 중국 내에서 생산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돼지고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6)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중국은 생명공학 제품 승인에 대한 그동안 진행 중이던 8개의 신청서를 검토하기로 약속했으며, 그에 따라 생명공학작물의 승인을 추진해 옴. 현재 NBC 심의 최종 승인 단계에는 2017년 공약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3개 제품을 포함한 총 5개 제품이 계류 중임.

□ 이외에 미국은 중국의 증치세 환급 정책이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함.

○ (증치세 환급 및 관련 정책) 중국은 때때로 중국산 상품의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판매 목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 상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통해 수출을 장려해 왔음. 미국은 2018년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유발했다고 주장함.[7] 해당 문제는 2019년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2019년 중국이 증치세 인하 등의 변경조치를 취한 바 있음.

〈표 1〉 2015~19년 NTE 보고서의 중국 무역장벽

분류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SPS	축산물 위생검역조치	○	○	○	○	○	미국은 중국이 SPS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꾸준하게 지적
	식품안전법	-	○	-	○	○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은 수출국에 과도한 부담임을 강조. 또한 이러한 규제는 중국이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
	생명공학작물 승인	○	○	○	○	○	중국의 생명공학작물 승인 보류와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비동기화 확대는 무역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
	원예작물의 시장접근	-	-	-	-	○	미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접근 승인을 요청
수입규제	농업 보조금	○	○	○	○	○	미국은 중국의 목화, 돼지고기, 밀,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조치가 불공정한 농업 보조금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옴. 2016년 12월 미국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9년 2월 승소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	-	○	○	○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TRQ를 적용해 미국 곡물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해왔음. 2016년 12월 미국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9년 4월 승소
	증치세(VAT) 환급 및 관련정책	-	-	-	○	-	미국은 중국의 수출 증치세(VAT) 환급조치 및 관련 정책들이 해당 상품의 중간 가공품뿐만 아니라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

주: 미국은 중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은 별도의 분류 없이 나열하고 있어, 저자가 구분함.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일본

일본 SPS 조치의 엄격성과 복잡성, 쌀 수입관리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

□ NTE 보고서는 일본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수입규제, 범분야 무역장벽 조치에 대해

7) 2019년 4월, 중국은 증치세 세율을 인하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지적함. SPS 및 수입규제 시스템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으며, SPS와 관련해서는 쇠고기, 식품첨가물, 살균제 사용,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쌀, 밀, 돼지고기, 쇠고기의 수입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함.

○ (TBT) 일본은 2017년 식품표시제도를 개정함. 개정된 제도는 일본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 이는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나, 미국은 주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일본 제조업자에게 다양한 수입산 원료의 사용을 주저하게 할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SPS) 미국은 일본의 SPS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제한 조치 및 식품첨가물, 농약 잔류 관리 제도의 엄격성을 지적함.

-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30개월령 쇠고기, 염소 고기, 젤라틴 및 콜라겐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감자의 경우 일본의 출하기간 제약(2~7월)으로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로의 육로 수송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지적함.
- 또한, 식품첨가물 및 농약 잔류 허용과 관련하여 일본 제도의 엄격성과 복잡성을 지속해서 언급함.

○ (수입규제) 미국은 일본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는 고관세와 쌀, 밀, 돼지고기 등의 수입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적함. 특히, 쌀 TRQ 운영방식, 밀 수입관련 국영무역, 돼지고기의 수문가격시스템(gate price system) 등이 비관세조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미국산 시트러스 계열 과일, 낙농품,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고관세를 지적함. 특히, 오렌지, 치즈, 건조감자플레이크, 사과, 토마토주스, 아몬드가루, 냉동감미옥수수, 쿠키, 포도, 와인 등을 언급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범분야) 일본이 영양보조제(nutritional supplement)를 식료품인 “건강식품(health food)”의 하위분류로 규제함에 따라 영양보조제가 건강식품의 승인과 관련한 제도에 적용을 받으며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함.

□ **미국은 일본의 식품첨가물제도 및 농약잔류허용기준과 같은 SPS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도의 엄격성과 처리기간이 긴 점이 수출국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 (식품첨가물제도) 식품첨가물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엄격성과 신규 물질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지적함. 일본은 식품첨가물 관리에 포지티브리스트 방식[8]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2년 지정 식품첨가물 목록 발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 최근에는

8)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은 등록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임.

식품첨가물 지정 및 기준 개정 신청을 지원하는 FADCC가 일본어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 해당 기관의 기능적 효율성을 우려함.[9)]

-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격과 표시제도는 미국이 일본의 무역장벽으로 줄곧 지적해 온 사항임. 쟁점은 일본이 살균제를 처리 시점에 따라 수확전(pre-harvest)에는 살충제(pesticide)로 수확후(post-harvest)에는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로 구분하는 것에 관련됨.[10)] 미국은 일본 생산자가 대체로 수확후 살균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국내 생산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일본의 구분법에 따라 동일한 살균제에 별도의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수확 후 처리된 살균제를 식품첨가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해옴.
- 그러나 2016년부터 일본은 살균제 등록 시 수확 전후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던 위험평가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8년 처음으로 단일방식을 통해 살균제를 등록하였음. 다만 여전히 수확 후 처리된 살균제는 식품첨가물 표시법을 적용받음.

○ (농약잔류허용기준) 미국은 일본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라 평가함. 다만, 특정국의 상품이 기준을 재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검사결과가 기준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특정국의 특정상품 선박을 모두 억류시키는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조치라고 지적함.

□ 일본의 쌀 수입관리와 관련, 미국이 일본의 TRQ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의 쌀 TRQ 운영과 수입쌀의 유통과정이 불투명하고 엄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적해 왔으며, 최근 일본이 수입관리에 취한 제도상 변화가 수입쌀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함.

○ 일본은 주로 일반입찰방식(Ordinary Minimum Access: OMA)과 자율거래방식(Simultaneous Buy and Sell: SBS)을 사용하여 TRQ를 운영함. 대부분의 물량을 OMA 물량으로 수입하는데, SBS 방식으로 도입하는 물량은 식품 및 식용 부문으로 유통되어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상품인 것으로 알려짐.

---

9) 일본은 2014년 FADCC(Food Additive Designation Consultation Center)를 설립함.

10) 미국이 지칭하는 국제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의미하며 Codex의 분류에 따르면 살균제(fungicides)는 살충제(pesticide)로 구분됨. Codex 매뉴얼의 살충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식품, 농산물 또는 동물 사료의 생산, 저장, 운송, 유통 및 처리 중 원치 않는 종의 식물이나 동물을 포함한 해충을 예방, 파괴, 유인, 제거 또는 통제하기 위한 물질을 의미하며, 식물의 성장 조절기, 고엽제, 방습제, 과일 희석제 또는 싹을 틔우는 억제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물질과 저장과 운송 중 상품의 악화를 막기 위해 수확 전후에 농작물에 적용되는 물질을 포함한다.”(출처: FAO·WHO. 2018. Procedural Manual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6th edition. FAO. Rome. Italy)

○ 미국은 일본이 수입한 쌀의 대부분은 정부가 비축한 후 가공용·사료용 쌀(non-table rice)로 판매되거나 식품원조 용도로 재수출한다고 평가함. 일본 소비자가 미국산 고품질 쌀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산 쌀에 대한 일본 소비자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 2016년 10월, 일본은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간 가격 조작 문제 해결을 위해 SBS 방식 수입을 잠정적으로 제한함. 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12월, SBS 입찰 계약 시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간 직접 거래를 막는 조항을 신설함. 이후 2017년 9월에는 SBS 입찰법과 관련하여 수입업자와 구매자 간 판매·양도를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개정함. 미국은 이러한 개정이 수입산 쌀이 일본 정부가 의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한다고 우려함.

〈표 2〉 2015~19년 NTE 보고서의 일본 무역장벽

분류1	분류2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TBT/SPS	TBT	라벨링 요건	-	-	○	○	○	일본의 2017년 식품표시제도 개정과 관련됨. 국내 제조상품에만 적용되나, 제조업자의 수입산 원재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SPS	쇠고기와 쇠고기 상품[1]	○	○	○	○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 개방 필요
		염소와 염소 상품	-	-	-	○	-	수입제한 조치 해제 필요
		식품첨가물	○	○	○	○	○	식품첨가물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 신규 및 개정 신청 과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설치한 FADCC의 기능에 대한 우려
		젤라틴, 콜라겐	○	○	○	○	○	제한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필요
		수확 전후 살균제 사용	○	○	○	○	○	살균제가 수확전와 수확후에 각각 살충제, 식품첨가물로 분류됨에 따라, 등록 시 위험평가의 중복 문제가 있었으나 일본이 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단일화. 다만 수확후 단계에서 사용된 살균제는 상품에 표기해야 하는 점을 지적
		농약잔류허용기준 (MRLs)	○	○	○	○	○	MRL 승인 신청 절차의 복잡성 및 위반 시 이루어지는 검사의 엄격성
		감자칩용 감자	○	○	○	○	○	2015년에는 육로수송을 제한하는 점을 지적함. 2016년부터 육로수송은 허용되었으나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지적
수입규제 (Import polices)	관세	시트러스 과일, 낙농품, 가공식품 등 농산물	○	○	○	○	○	오렌지, 치즈, 건조감자플레이크, 사과, 토마토주스, 아몬드가루, 냉동감미옥수수, 쿠키, 포도, 와인 등의 고관세를 지적
	비관세	쌀 수입 시스템	○	○	○	○	○	일본의 쌀 TRQ 운영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일본이 수입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가 미국산 쌀의 시장접근을 제한함을 지적
		밀 수입 시스템	○	○	○	○	○	일본이 수입 밀을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분업체에 판매하고 있음을 지적
		돼지고기 수입 시스템	○	○	○	○	○	수입상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수문가격시스템이 가변부과금 형태로 관세로 작용함을 지적
		소고기 세이프가드	○	○	○	○	○	일본의 WTO SSG 발동 대상임을 지적하면서 발동상황을 모니터링

(계속)

분류1	분류2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범분야 무역장벽		영양보조제	○	○	○	○	○	영양보조제 승인 및 기능성문구 제도 적용의 어려움.
		식품 및 식품 보조제의 독점 성분 공개 요구	○	-	-	-	-	새로운 식품이나 식품보조제의 상품분류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상품의 원료와 식품 첨가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점이 기업의 독점성분(Proprietary Ingredient) 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함. 다만 2015년 이후에는 관련사항이 언급되지 않음.

주: 1) USTR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5월 17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 요건을 해제함(https://insidetrade.com/trade/us-beef-producers-gain-full-access-japanese-market).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캐나다

캐나다의 낙농 등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과 곡물, 주류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지적

□ **미국은 캐나다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수입규제(import policies) 부문의 제도를 지적함.**

□ **TBT 관련 캐나다 종자법과 치즈 성분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한 포장전면표시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수입규제 관련해서는 낙농부문 용도별 우유등급(milk class), 지역별 수입산 주류 판매 제한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음.**

○ (TBT) 미국은 캐나다 종자법이 규정하는 품종등록제도가 미국산 종자의 캐나다 시장 접근을 저해하며, 치즈 성분표준이 미국산 농축우유단백(Milk Protein Concentrate: MPC)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함. 2018년에는 캐나다가 도입한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포장전면표시(Front of Package: FOP) 제도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표현한 바 있음.

- 캐나다의 품종등록제도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등록되지 않은 종자의 수입, 판매, 홍보가 제한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
-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FOP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8년 신규 지적됨. 2018년 미국 정부 및 산업계가 캐나다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양자 협의도 이루어졌으나, 캐나다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운영하는 자율 FOP 제도가 캐나다가 요구하는 원료 함유량의 높고 낮음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함.

○ (수입규제) 미국은 캐나다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 곡물등급제, 지역별 주류(와인·맥주 및 증류주)판매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2019년에는 벌크화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과일, 채소) 중 수입등급이 규정된 품목의 경우 장관면제가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 새롭게 언급함.

- 미국은 캐나다의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 특히 축산업(낙농, 닭, 칠면조, 계란 산업) 전반의 생산 할당제, 생산자마케팅보드, TRQ 제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 캐나다 곡물법은 곡물등급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곡물을 캐나다산으로 한정함. 미국은 캐나다 곡물창고에서 동일하게 평가받을 경우 미국산 곡물(보리, 밀 등)은 프리미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계약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캐나다로 수입되는 벌크화물형 신선과일 및 채소의 경우 장관면제[11]가 요구되는데 이는 수입 등급이 규정된 상품에 적용됨. 보고서는 감자와 관련된 장관면제에 대해 지적함.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감자 무역에 관한 기술약정(technical arrangement)을 체결한 바 있음. 이 약정에 따르면 캐나다가 미국산 감자의 장관면제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나, 원활히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됨.

□ **낙농부문 공급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용도별 우유등급(milk class)에 대한 내용 지적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NAFTA 재협상(USMCA 협상) 시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 타결 쟁점 중 하나였음.**

○ 2016년에는 캐나다 SMCP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용도별 우유등급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함.[12] 그러나 2016년 이후 캐나다가 우유등급을 수정하고 신규 Class 7(온타리오주의 Class 6)을 도입하자, 이와 같은 제도변화가 미국의 가공원료 수출을 저해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함. 낙농부문의 공급관리시스템은 전반에 걸쳐 NAFTA 개선협상(USMCA)시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 협상 결과 캐나다가 Class 6과 Class 7을 폐지하는 선에서 양국이 합의함.[13]

□ **미국은 2015년 캐나다의 주류판매제도가 수입산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지역별 판매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함. 이후 보고서에서는 각 지역별 제도를 검토하고, 미국과 캐나다 간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수입산 와인 판매 제한 관련 WTO 분쟁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11) 장관면제(ministerial exemption)는 국내 생산량 부족이 입증되어야 함.

12) 캐나다는 우유마케팅보드가 원유수급을 조절하고 있음. 마케팅보드는 낙농가로부터 수취한 원유(시유 및 가공용원료유)를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용도별차등가격제도(Harmonized Milk Classification System) 운영을 통해 조절함. SMCPP(Special Milk Class Permit Program)는 우유가공업자들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산 원료 활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임. 미국은 이를 수입산 원료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지적함.

13) 미국이 보고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도 변화는 SMCPP 프로그램에 Class 7을 신규로 도입하는 점이며, Class 7에는 기존의 우유등급상 Class 4(a)1과 Class 4(m)로 분류됐던 원료도 포함됨. Class 7 가격조절 대상에는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원료인 고단백농축물이 해당됨.

○ 캐나다는 개인 수입(48시간 이상 여행자) 알코올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면제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함. 이 세금은 주별(province)로 상이함. 또한 캐나다 대부분의 주는 지역주류보드를 통해 모든 주류의 판매를 관리하고 있어 주별로 주류판매정책이 상이함. 보고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온타리오, 퀘벡 주의 정책을 지적함.

○ 특히 BC주는 수입 와인의 판매를 "store within a store" 형태로 제한함. 미국은 BC주의 와인 판매제도에 대해 캐나다를 WTO에 제소, 2019년 3월 패널이 설치되어 분쟁이 진행 중임.

〈표 3〉 2015~19년 NTE 보고서의 캐나다 무역장벽

분류1	분류2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TBT/SPS	TBT	치즈성분기준	○	○	○	○	○	캐나다 치즈성분기준은 건조 MPC 함량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은 미국산 건조 MPC에 대한 수요를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
		포장전면표시제도	-	-	-	○	○	2018년 신규 지적
		미국산 종자 수입 제한	○	○	○	○	○	캐나다의 품종등록제도에 따라 CFIA 에 등록되지 않은 종자의 수입, 판매, 홍보가 제한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수입규제 (import policies)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	시스템 전반	○	○	○	○	○	캐나다의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 특히 축산업(낙농, 닭, 칠면조, 계란 산업) 전반의 생산 할당제, 생산자마케팅보드, TRQ 제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
		지리적표시제	○	○	-	-	-	캐나다와 EU 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 지리적표시제규정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낙농부분 Milk Class	-	○	○	○	○	2016년에는 캐나다 SMCP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용도별 우유등급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였으나, 이후 기간 NAFTA 재협상(USMCA 협상) 진행과 함께 내용이 구체화
	미국산 곡물 수출제한	곡물법 곡물등급제	○	○	○	○	○	캐나다 곡물법이 규정하는 곡물등급제가 미국산 곡물의 판매를 저해한다고 지적
	와인 · 맥주 및 증류주	지역별 상이한 판매제도와 개별수입세	○	○	○	○	○	2016년 문제제기 이후 2017년부터 BC, 온타리오, 퀘벡 주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
	장관면제	벌크화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장관면제	-	-	-	-	○	미국산 감자의 캐나다 수출 시 장관면제 획득 절차와 관련된 지적임. 장관면제가 신규 도입제도는 아니나, 2007년 양국 간 체결된 약정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 유럽연합(EU)

EU의 TBT 조치가 회원국별로 상이함을 지적하고,
SPS 조치에 대한 EU의 과학적 판단과 안전성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우려

□ **미국은 유럽연합의 무역장벽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수입규제(import policies)에 대해 지적함.**

□ **TBT 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영양성분, 품질 계획(quality scheme) 등을 포함한 식품정보표시제도 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회원국별로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함. 또한, EU가 최근 이행 및 위임 법률(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의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함.**

○ (투명성 및 통보의무) EU 법제상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은 비입법법률에 해당함.[14] 미국은 최근 EU가 이러한 법률의 준비 및 채택 과정에서 적절한 통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겪은 무역상기술장벽이 증가했다고 설명함. 그 예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및 포장에 대한 규정(CLP), 원산지표시제도(COOL)에 대해 언급함.

○ (원산지표시제도) 미국은 유럽연합 8개국(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및 개정 내용이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함. 특히 EU의 국가별로 원산지표시가 요구되는 품목, 성분, 표기 문구, 표기 정보 등이 상이하며 일부 규정은 EU 회원국,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에 선택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품질계획) EU Regulation 1151/2012에 따라 규정되는 농산물 품질계획은 농산물의 특수한 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15] 원산지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 지리적표시보호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전통특산품보증제(Traditional Specialties Guaranteed: TSG), 선택적 품질 용어(optional quality terms)에 적용됨. 미국

14)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89조에 따르면 유럽의 법률은 입법법률(legislative act)과 비입법법률(non-legislative act)로 나눌 수 있음. 입법법률은 통상적이고 특정한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법률로 EU 의회 및 이사회(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함. 비입법법률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채택의 권한이 부여됨(EUR-Lex 〈https://eur-lex.europa.eu〉). 위임 및 이행 법률은 입법법률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사항을 정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법률의 도입은 입법법률에서 정의됨.

15) 유럽연합이 농업 정책 부분에서 사용하는 '품질(quality)'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포함한다. ① 원산지, 생산지역, 통물의 품종 또는 생산 방법 등 상품의 특수한 속성, ② 상품이 함유한 특별한 성분에 따른 속성 ③ 지역의 전문가 노하우, 지역의 전통에 따른 특별한 방법으로 생산된 속성 ④ 높은 수준의 재배 환경이나 가축후생 기준을 준수함에 따른 속성 ⑤ 가공, 포장, 라벨링 측면에서 상품 가치나 구매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속성(출처: 유찬희. 2006. EU 농산물품질정책과 지리적표시제 개요)

은 품질계획의 몇몇 측면에 대해 속성 평가의 불명확성, 자의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EU는 선택적 품질 용어의 사용을 인정함. 선택적 품질 용어란, 예를 들어 올리브유의 '첫 냉압착'과 같은 용어로 소비자 필요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표기임. 이와 관련하여 '산간지역' 생산품 등의 표기를 허용하는 점에 대해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함.
- TSG와 관련하여, 상표의 등록 시 선사용(prior use of a name)의 개념에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는지 등을 조항의 문구만으로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점을 지적함. 또한, 품질계획의 보호 범위에 보통의 상품명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함.

○ (와인의 전통적 표현) EU는 전통적인 와인 라벨 용어(tawny, ruby, chateau 등)에 있어 독점 사용을 추구해 왔으며, 해당 용어가 포함된 미국산 와인은 판매가 제한되어왔음. 미국은 EU의 두 가지 라벨 용어(cream, classic) 사용승인 외에도 추가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EU가 2018년 5월 WTO에 제출한 와인 라벨링 규정 초안은 관련 사안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냄.

□ SPS와 관련해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허용, 생명공학기술 및 작물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지적해 옴. 미국의 지적사항은 대체로 국제기준 및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안전성, 위해성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EU와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EU의 생명공학기술 및 유전공학(Genetically Engineered: GE) 작물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해당 제도들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함.

- (동물복제 금지) EU는 2015년 신식품(novel foods)과 관련된 법을(Regulation 2015/2283) 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2018년 1월 시행됨. 이번 개정에 따라 EU는 가축(물고기와 가금류도 포함)과 스포츠용 동물의 복제 및 복제본의 후손을 생산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며,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상품(식품, 정액, 수정란 등을 포함)을 금지함. 미국은 복제기술은 가축 개량에 유익한 기술이며 복제기술로 복제한 동물 및 그의 후손의 생산품과 전통적 육종 방식에 따라 생산된 것의 식품안전성 측면의 차이가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EU의 결정에 우려를 표함.
- (농업 생명공학기술 작물의 승인 지연) 미국은 EU의 GE 작물의 승인제도가 예측 불가하고, 지나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최종 승인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함. 미국은 이러한 EU의 승인 지연이 미국의 주정박, 옥수수글루텐사료 등의 수출품이 LLP 문제[16]에 직면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17]
- (GE 작물 재배 금지) 2015년 EU는 기존의 GMO 법(Directive 2001/18/EC) 개정에 따라

16) LLP(Low Level Presence) 문제란 미승인 GE 작물의 비의도적혼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함.

17) 미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EU에 승인이 요청된 66개 GE 작물 중 49개가 EFSA(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검토 단계에 있었으며 17개가 EU의 승인 결정을 남겨두고 있음. 2018년 위원회는 5개의 GE 상품(식품 및 사료용)을 인정(옥수수(4건, 재승인 2건 포함), 사탕무(1건, 재승인))함. 미국은 이미 EU와 몇 차례 미승인 GE 작물의 LLP 문제를 경험한 적 있음.

회원국이 GE 작물 재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이후 19개 국가(17개국+2개국(4개 지역))가 GE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였고, 2017년 기준 포르투갈과 스페인만이 GE 옥수수 재배를 허용하고 있음.

○ 성장호르몬과 베타작용제 사용금지, 축산물 RPT(Pathogen Reduction Treatment) 처리 금지, 우유 체세포 수 규정, 식품첨가물 규제, 내분비교란물질 지정, 특정위험물질(SRM)증명요건[18], 농약 및 잔류허용 기준 등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다양한 EU의 규제에 대해 지적함. 전반적으로 미국은 EU의 물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 식품 안전성에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점,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위험이 아닌 위해에 기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함.

- (호르몬과 베타작용제 사용 금지) 미국은 EU가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자 이를 WTO에 제소하였고, 해당 분쟁은 약 20년에 걸쳐 상호 합의가 결정됨. EU의 패소로 판정났으나, 여전히 EU는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미국은 EU가 안전성이 확인된 호르몬이나 베타작용제(예: 락토파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음. EU-미국 쇠고기 분쟁의 이행조치로 EU는 미국에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은 고품질 쇠고기의 무관세 수입물량(HQB quota)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외 타국산 쇠고기도 HQB 무관세 수입 물량을 활용하여 EU로 수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EU에 의견을 제시함.
- (내분비교란물질지정) EU의 식물보호제의 시장유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1107/2009)과 해당 규정의 내분비 교란물질 분류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EU는 유해성 수준(hazard based)에 따라 내분비 교란물질을 분류하고 규제의 강도를 달리함. 미국은 EU의 분류가 물질의 노출이나 함량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내재적 성질에 기반하는 점을 지적함. 또한, 개정에 따라 기존에 안전하게 널리 사용되어온 몇몇 식물보호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이 설정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농약잔류허용기준) EU는 Regulation (EC) 396/2005에 따라 농약잔류수준을 관리하며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Regulation (EC) No 1107/2009에 의해 관리됨. 위해(hazard) 기반의 Regulation (EC) No 1107/2009하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위험(risk) 기반의 Regulation (EC) 396/2005가 규정하는 위험평가분석 없이 기본 허용 수준인 0.01 mg/kg으로 기준이 설정됨. 미국은 해당 기준이 상업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 (특정위험물질증명) EU는 미국과 다르게 특정위험물질(SRM)을 정의하고 있으며, EU에 수출되는 가축 부산물이 EU의 SRM 정의를 충족시키고 소해면상뇌병증(Bovines Spongifrom

18)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은 소, 양, 염소 등 가축의 부위 중 프리온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규정한 것임. 쇠고기의 경우 통상 두개골, 뇌, 3차신경절, 눈, 등골뼈, 척수, 등근신경절 등을 일컬음.

Encephalopathy: BSE)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특히 EU가 요구한 모든 미국 제품의 "태어나고 자란" 조건의 제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협의체와 WTO SPS 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표 4〉 2015~19년 NTE 보고서의 EU 무역장벽-TBT, SPS 부문

분류	무역장벽	세부사항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TBT	투명성과 통보		-	-	-	○	○	이행 및 위임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
	유럽연합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	○	○	○	유럽연합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지적. 특히 적합성 평가 기관은 지정기관이어야 하며, EU 소재로 제한하는 점 등에 대해 무역 저해의 우려가 있음을 표명
	원산지표시제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루마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리투아니아	-	-	○	○	○	회원국별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지적. WTO TBT 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표명
	영양성분 표시		○	○	○	○	○	Regulation 1169/2011에 따라 2016년부터 영양표시가 의무화. 회원국별로 상이한 표시규정에 대해 우려 표명
	건강 경고 문구 표시	아일랜드/Public Health Bill	-	-	-	○	○	아일랜드가 주류에 건강상의 위험을 알리는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바, 미국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WTO TBT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
	농산물 품질제도 관련		○	○	○	○	○	품질제도에 대한 우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품질조건의 '산간지역' 표기 기준의 불명확성, TSG 관련 상품명의 '선사용(prior use)' 문제, PGI 관련 보통상품 명칭 등록의 문제 등을 지적
	와인의 전통적 표현		○	○	○	○	○	EU는 전통적인 와인 라벨 용어의 독점 사용을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규제는 해당 용어가 포함된 미국산 와인의 판매를 제한함을 지적
	증류주 숙성 의무 요건	위스키	○	○	○	○	○	EU는 상품에 '위스키'를 표기할 수 있는 의무 조건으로 최소 3년의 숙성기간을 설정함. 미국은 이러한 숙성조건을 폐지할 것을 촉구
	동물 복지 증명		○	○	○	○	○	미국은 EU의 동불복지증명 요구사항이 식품안전 또는 동물건강 향상에 대한 증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SPS	성장호르몬과 베타작용제 사용 금지		○	○	○	○	○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며, EU-미국 소고기 분쟁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적
	동물복제 금지		-	-	○	○	○	2015년 신식품법 (Regulation 2015/2283) 개정과 관련 법 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정사항이 식품안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
	농업 생명공학기술	GE 작물에 대한 승인 지연	○	○	○	○	○	미국은 EU의 GE 작물 승인 지연이 미국의 수출상품이 LLP 문제에 직면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GE 작물 재배 금지	17개 4개 지역	-	○	○	○	○	EU 회원국 전반이 GE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점에 대한 우려 표명

(계속)

분류	무역장벽	세부사항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축산물 PRT 처리 금지	승인한 PRT 이외의 물질 사용을 금지	○	○	○	○	○	미국은 축산물 처리 과정에서 PRT의 사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며, EU가 금지하는 물질 중에는 USDA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립한 물질을 포함하는 점을 지적
	수출증명서		○	○	○	○	○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증명서가 과도한 정보기입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지적
	우유 체세포 수		○	○	○	○	○	EU의 우유 체세포 수 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크게 차이 나는 점(등급 A 우유 기준 EU는 40만 세포/ml, 미국은 75만 세포/ml)과 EU가 요구하는 농가단위 표본검사와 제품인증서가 행정적 부담이 되는 점을 지적
	식품첨가물 규제		○	○	○	○	-	EU의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의 허용 향미료 목록의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5개가 삭제된 점을 지적
	감귤궤양병	과수원 점검 조건	-	-	○	-	-	미국은 2010년 EU에 감귤궤양병 감염 증빙 요건 완화를 요구(과수원 점검 요건 삭제 청원). 2017년 EU는 해당 요건을 완화
	내분비교란 물질 지정		○	○	○	○	○	EU의 Regulation(EC) 1107/2009 및 관련 규정의 내분비 교란물질 분류기준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
	동물 부산물 (우지 포함)		○	○	○	○	○	EU의 동물부산물 및 우지(tallow) 수입 관리 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지적. 특히 우지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
	살아 있는 소		-	○	○	○	○	미국산 살아 있는 소(Live cattle)의 수입 금지(EU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되는 경우를 포함)를 지적
	양념 돼지고기의 수입증명서		-	○	○	○	○	양념 돼지고기의 사전증명서가 상품이 냉동상태일 것을 요구하는 점에 대한 미국의 지적
	특정위험물질(SRM) 증명요건		-	○	○	○	○	미국과 EU은 SRM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EU가 수입 가축 부산물에 대해 EU의 SRM 정의 충족, OIE 규정상 무시할 만한 BSE 위험지역에서 생산될 것을 규정하는 점에 대해 지적
	농약잔류허용기준	MRL 규정 전반	-	○	○	○	○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련 EU의 규정 개정을 모니터링. 특히 살균제 중 하나인 포세틸알의 MRL 기준 및 적용 품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또한 항산화제인 다이페탈아민의 사용 금지(MRL 기본값 적용) 조치가 EU로 수출되는 미국산 배와 사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조치를 완화할 것을 촉구
		포세틸알 (Fosetyl-al)	○	○	○	○	-	
		다이페탈아민 (Diphenylamine)	○	○	○	○	-	
		프랑스						
		비소페놀 (Bisphenol A) 규제	-	○	○	○	○	프랑스는 2015년부터 식품접촉 소재 및 제품에 비소페놀의 사용을 금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경우 및 주위환경에 따라 우연적으로 흡입되는 경우 모두를 금지
		다이메토에이트 (Dimethoate)가 처리된 체리 수입 금지	-	-		○	○	다이메토에이트는 진드기, 초파리 등의 해충을 처치하는 살충제. 프랑스는 2018년 다이메토에이트가 처리된 체리의 수입을 금지(반복적 금지령). 미국은 해당 물질은 EU에서 사용이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일방적 금지조치가 될 수 있음을 지적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 **EU의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바나나와 현미에 대해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 EU의 독자적인 관세분류체계, 원예작물의 보조금 등을 지적함.**

○ (바나나, 현미) 미국은 EU와 바나나와 현미에 대한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협정의 이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미국과 EU는 EU 바나나 분쟁[19] 판정의 이행 조치로 바나나에 대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에 따르면 EU는 바나나 수입 시 MFN에 근거한 관세 적용 외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함.[20] 그러나 2013년 이탈리아가 EU의 구제도(2006년 이전)에 근거하여 바나나 수입허가제를 운영한 점에 대해 협정 의무 이행에 우려를 표함.
- 미국과 EU는 미국-EU 쌀 협정(U.S.-EU Ric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발효됨.[21] 이 사안의 경우 2017년까지는 보고서에 언급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음.

○ EU의 관세분류체계(TARIC)하에서 가공식품(특히, 제과·제빵류, 기타식품조제품)의 분류는 당류, 전분, 유지방, 유단백 함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들 성분의 함량에 따라 관세가 차별화됨.[22] 이에 따라 수출국이 EU가 규정하는 측정 방식에 따라 함량을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발생함을 지적함.

○ (원예작물 보조금) EU는 2015년부터 기존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를 대체하는 기초직불제(basic payment scheme)와 녹색직불제(greening payment)를 시행함.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유럽연합 회원국 단위의 직불제 운영 투명성을 지적하며, 숨겨진 보조금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함.

---

19) EC-Bananas III 으로 불리는 이 분쟁은(DS27) 1996년 중남미(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와 미국이 EU의 구식민지 국가에 대한 바나나 무관세 특혜에 대해 제소한 건으로 2008년 상소절차가 완료됨. EU의 패소로 최종 판정 났으며, 2012년 상호 간 이행 조치에 만족함에 따라 종료됨. 분쟁의 이행조치 중 하나로 EU는 중남미 국가들과 '바나나에 대한 제네바 무역 협정(Geneva Agreement on Trade in Banana)'을 체결함.

20) 미국과 EU 간 체결한 이 협정은 EU가 바나나 분쟁의 이행 조치로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바나나에 대한 제네바 무역 협정(Geneva Agreement on Trade in Banana)'의 이행 의무와 미국과 EU 간 분쟁의 종료를 확인함. EU는 바나나 수입 시 MFN에 근거한 관세 적용 외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EU 영토 내 유통 시 바나나의 원산지 또는 공급 소유권에 따라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네바 협정은 2012년 발효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EU 간 바나나 협정은 2013년 발효됨.

21) 이 협정에 따라 EU는 미국산 현미(husked rice, excluding 'basmati')에 MFN 양허 관세보다 낮은 관세(실 수입량이 참조 수입량의 15% 미만일 경우/참조 수입량은 6개월 단위로 산정함)를 적용함(European Council Decision(2005/475/EC)).

22) EU 법령: 관세분류체계(TARIC)-Regulation (EEC) No 2658/87, 성분함량 측정 관련-Commission Regulation (EC) No 900/2008 및 관련 수정안(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8/2010 등)

〈표 5〉 2015~19년 NTE 보고서의 EU 무역장벽-수입규제 부문

분류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비관세	바나나	○	○	○	○	○	바나나, 현미와 관련하여 EU와 체결한 협정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
	현미	○	○	○	-	-	
	독자적 관세분류 체계 (meursing table)	○	○	○	○	○	EU의 관세분류체계는 당류, 전분, 유지방, 유단백 함량에 따라 가공식품을 분류하며 관세를 차별 적용. EU 기준에 맞게 함량을 측정하고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상과 다른 관세 적용 사례가 발생함을 지적
	원예작물 보조금	○	○	○	○	○	회원국 단위의 직불제 운영 투명성을 지적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NTE 보고서의 한국 무역장벽

한국의 SPS(잔류허용기준 등), TBT(주류라벨링 등), 수입규제(원산지검증 등)로 인해 신선 농축산물 시장접근이 제한적임을 지적

□ **지난 5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그리고 수입규제(import policies) 부문의 제도를 지적하였음.**

□ **TBT와 관련해서는 주류 라벨링과 유기농식품 관련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함.**[23)]

○ (TBT) 미국은 2017년부터 한국이 WTO에 통보한 주류 라벨링("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문구 포함)과 관련해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통보한 절차를 지적하고 알코올 소비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함.

○ 또한 미국은 2014년 7월 한국과 체결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24)]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옴. 동 협약은 유기가공식품에만 적용되나, 미국은 협약에서 다루는 제품의 범위를 모든 식품과 농산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함.

□ **SPS와 관련해서는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감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음.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신규 조치 도입 과정에 있어 미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쇠고기와 감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주장함.**

○ (SPS) 농업생명공학(Agricultural Biotechnology)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규제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음. 한국의 여러 개선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LMO 법이 5개 기관[25)]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 변경 없는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승인과정 개선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힘.

---

23) 이외에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TBT 조치를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OSB 합판 표준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함. 다만 이에 관련된 내용은 본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서술하지 않음.

24) 이 협약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증된 가공품이 수입국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있게 함.

25)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여 국가 바이오안전성을 관리함.

- 기존의 LMO 제품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논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한국은 농약잔여물과 수의약품에 대해 PLS(Positive List System)[26]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이를 두고 PLS 전환에 따른 미국 산업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년의 교육기간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이 임시 MRL을 지정[27]할 때 Codex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장함.

○ 미국은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적해오고 있음. 2008년 이전 한국은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제한하다 2008년 전면 재개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였음. 그러나 미국은 실제로는 한미 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이면서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개방을 요구함.

- 미국은 특히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이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한국이 쇠고기 패티나 육포·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할 것을 주장함.

○ 2014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한국은 미국 전역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함. 이를 두고 미국은 HPAI가 발생한 지역에만 무역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추후 이와 같은 HPAI 발생 시 HPAI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교역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은 2012년 8월 미국(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지브라칩(zebra chip) 세균병을 이유로 질병 발생 주로부터의 감자 수입을 금지함. 2017년 12월 수입금지가 해제되었으나, 일부는 감자갈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미국의 개방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특혜관세활용을 위한 원산지 검증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모니터링함. 또한, 쌀 관세화 이후 한국의 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제시함.

26)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며,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었음.

27) 한국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용 MRL의 폐기를 연기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완료 시 또는 2021년 말까지 사용될 임시 MRL을 지정함.

○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 특혜관세활용과 관련해 과도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2018년 한·미 FTA 개정 논의의 맥락에서 한국은 원산지 검증절차의 구체적인 제도변경에 합의함.

- 미국은 관세율 우대에 대한 부담스러운 검증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한국 정부에 의해 제공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음.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검증 과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 상품무역위원회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2018년 한·미 FTA 개선협상을 통해 원산지 검증제도 변경에 합의했으며, 한미 원산지 검증위원회를 통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

○ 농축산 수출품의 관세 및 세금과 관련하여 미국은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운영하는 할당관세제도를 모니터링함.

□ 미국은 한국의 쌀 관세화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이 설정한 관세율(513%)이 너무 높다고 지적함. 관세화와 함께 한국은 국별 쿼터를 폐지하였으나 미국은 국별 쿼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해옴.

○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와 국별쿼터 폐지를 골자로 한 관세화 계획을 통보함. 또한, 전체 TRQ 물량 중 일정비율을 식탁용 쌀로 수입하는 MMA 의무 조항을 폐지하였음.

- 이에 대해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국과 5개국 간의 협의가 2015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국별 쿼터(CSQ)[28]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2019년 보고서에는 국별 쿼터 부활 요구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쿼터가 보장되면 관세율에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2018년에는 과일류, 2019년에는 원예작물(horticultural products)에 대한 SPS 조치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2017년 미국동식물검역소와의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한·미 FTA SPS 위원회를 개최함. 한국은 현재 오리건 주(Oregon)에서 생산된 블루베리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체리 수출프로그램 개선, 수입금지 품목인 사과와 배에 대한 검역 이슈 논의를 진행함.

○ 미국은 원예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SPS 장벽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힘. 미국의 이러한 요구 중 몇몇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그 진전은 경우에 따라 미미하였음. 원예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8) 국별쿼터는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할 쌀 가운데 일정 물량을 특정 국가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표 6〉 2015~19년 NTE 보고서의 한국 무역장벽

분류1	분류2	무역장벽	2015	2016	2017	2018	2019	동향
TBT/SPS	TBT	주류 라벨링	-	-	○	○	-	한국의 주류 라벨링 WTO 통보와 관련하여 알코올 소비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과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
		유기농 식품	○	○	-	-	-	2014년 7월 체결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
	SPS	농업생명공학	○	○	○	○	○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규제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꾸준히 지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	○	○	○	○	한국은 쇠고기 수입허용(30개월령 미만이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것) 조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
		원예작물 시장접근	-	-	-	○	○	미국은 한국 원예작물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SPS 규제 완화 요구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	○	○	-	-		HPAI 발생 시 전 지역에 무역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질병발생 지역에만 무역제한을 부과할 것을 요청
		농약잔류허용기준 (MRL)	○	○	○	○	○	한국의 PLS 제도 도입과 관련, 미국은 PLS 전환에 따른 미국 산업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년의 교육기간을 요청
		감자	○	○	○	○	○	미국의 지브라칩(zebra chip) 세균병 발생에 따라 2012년 취해진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수입해제를 요청. 2017년 수입이 허용
수입규제 (import policies)	원산지 확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혜택	○	○	○	○	○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 특혜관세활용과 관련해 과도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한다는 우려를 제기. 2018년 한미 FTA 개정 논의의 맥락에서 한국은 원산지 검증절차의 구체적인 제도변경에 합의함.
	관세와 세금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	○	○	○	○	한국의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 언급
	쌀	쌀 관세화	○	○	○	○	○	미국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이행 관련, 513% 관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별 쿼터(CSQ) 보장을 요구

자료: 2015~19년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주요국 무역장벽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최근 5년간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함.**

□ **주요국 무역장벽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상대국 제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주요 관심 수출품목(낙농품, 주류 등)에 대한 무역장벽이 조사됨에 따라 한국의 이해관계와는 차이를 보임. 그러나 표시제도, 주요 축산물과 원예작물에 적용되는 SPS 조치의 내용,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규제 동향 등은 참고할 만한 사항임.

□ **무역장벽보고서에 비추어볼 때 미국은 상대국의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음. 새로운 제도 도입, 제도의 개정 사안 모니터링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 제도의 지나친 엄격성과 복잡성, 과학적 근거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국가별 보호 수준 정도, 무역왜곡 우려 등에 비추어 평가함.**

○ 미국은 본고에서 검토한 중국, 일본, 캐나다, EU가 미국산 신선농축산물에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통되게 수입금지해제를 요구함. 또한 낙농품과 곡물 등과 관련하여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제도가 무역왜곡적일 수 있음을 지적함.

○ 중국과 캐나다의 국내 농업 관련 공급관리제도나 국내보조 등이 무역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함.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SPS 조치에 대해 주로 평가하나 평가의 내용은 차이를 보임.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엄격성과 복잡성을 주로 지적함. 그러나 EU의 제도에 대해서는 SPS 조치 기준과 수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미국의 판단과 상이한 점을 들어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통상 협정 추진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통상 환경 변화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미국의 관심부문이며, 특별히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실제 양자 또는 다자 간 무역 협상의 주요 이슈이거나,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의 용도별 우유등급제도는 NAFTA 재협상(USMCA 협상)의 주요 타결 쟁점 중 하나였음. 협상 개시를 전후로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보고서에 언급되기 시작했고, 협상 진행과정에서 내용이 구체화됨.

○ 미국은 중국의 TRQ, 국내보조 등에 대해서서도 양자 및 다자간 협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미국이 해결 의지를 표출해 온 사안임. TRQ와 국내보조 문제 모두 최근 WTO 분쟁으로 발전한 바 있음.

□ **미국이 한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주류라벨링, 신선농축산물의 수입금지,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임. 내용적 측면에서 미국은 일반적인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다만 신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유사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적 및 우려사항과 양국의 협의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시장에 신선농축산물의 수입허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주류라벨링에 건강문구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제도 변경사항 또한 다른 국가에도 우려를 표하는 사안임.

○ 한국은 농약잔류허용기준(MRL)에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 사항은 없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미국 산업의 적응기간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음.

-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장벽 중 하나로, PL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EU의 무역장벽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일본에 대해서는 제도 위반 조치의 엄격성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나, EU의 제도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 승인 목록, 허용 기준 등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국이 이해할 만한 과학적 근거 제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일본, EU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